경기도 사격플라자

경기도사격테마파크
통합관리동 건립사업 설계공모

질의회신집 2020.08.28

-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설계경기 규정 또는 지침에 대한 추가 또는 수정으로 간주합니다.
- 질의회신 중 #1, #3, #5번 질문의 답변 내용은 [설계지침 2.0 버전]에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A. 설계규정

01. **Q** 설계지침서 내 작품접수일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있다. (설계지침서 1.7에는 작품접수일이 10월 7일이나, 설계지침서 1.11, 3.3에는 작품접수일이 9월 29일로 기재됨) 최종 작품접수일이 언제인지?

A 본 설계공모의 작품접수 일정은 2020년 10월 7일, 10:00~17:00입니다.

02. **Q** 작품심사 이전에 작품제출업체와 특정 심사위원 간의 업무상 또는 개인적 관계가 의심될 시, 심사 참여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혹은 상기와 같은 문제 발생을 고려한 별도의 심사공정성 확보방안이 있는가?

A 본 설계공모에는 심사의원, 전문위원 혹은 그가 속한 조직은 본 설계공모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설계지침서 1.6)
본 설계공모는 공모전의 익명성을 위하여 참가자는 제출물에 PIN 외에는 참가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어떤 표기도 할 수 없으며(설계지침서 1.12), 심사 시에는 PIN 번호를 가리고 심사번호를 부여하여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도체육회에서는 경기도에서 선정한 본 공모전의 심사위원이 경기도 및 본 공모전의 관련 규정, 그리고 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심사하도록 설계공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B. 설계지침

03. **Q** 설계지침서 2.4. (2)의 "최대 층수 6층 이내로 계획"에서 지하 포함 6개 층인지, 지상 6층 이내인가?

A 참가자는 설계안을 지상 6층 이내로 자유롭게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04. **Q** 최대 층수 6층 이내의 범위에서 층수는 자유롭게 계획이 가능한지?

A #3번 답변 참조

05. **Q** 이 프로젝트는 전체 경기도 사격테마파크의 증축에 해당하여 해당 계획대지(경기도 사격테마파크 내 지정된 대지)에 법정 주차계획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증축에 해당한다면 계획대지에 적용되는 법정 건폐율과 용적률의 적용은 전체 경기도 사격테마파크를 고려하여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획대지만을 고려하여 법정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증축에 필요한 법적인 검토를 위한 전체 경기도 사격테마파크의 건축개요를 제공할 수 있는지?

A 본 사업은 전체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내에 본 프로젝트의 건물을 새로 추가하여 건립하는 증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정 주차계획, 건폐율 및 용적률은 참가자의 제안안에 따른 전체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시설 면적의 변화를 고려하여 계획해야 합니다. (기존 경기도 사격테마파크의 건축개요는 수정된 설계지침 2.0버전의 2.2. (4)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따른 경기도사격테마파크 전체 건축 연면적의 증가에 따른 법정 주차대수와 참가자의 계획에 따라 변경된 경기도사격테마파크 전체 주차대수를 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하며(설계지침 2.4. (10)), 본 사업의 계획대지 안에서 증축에 해당하는 법정 주차계획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시설의 규모는 전체 경기도 사격테마파크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고려하되, 설계지침의 시설면적표(표 1)와 세부 설계지침의 내용을 준수하여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C. 제출도서 및 작성기준

06. **Q** 설계지침서 3.1, 3.2에 조감도 및 투시도에 대한 제한 사항이 없는데, 이는 렌더링을 포함한 프로그램이나 표현에 제한이 없는 것인가? 최근 발주되는 설계공모에서는 참가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감도 및 투시도를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에 따른 렌더링을 하지 않는 3차원 이미지로만 표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설계공모에서도 같이 적용할 수 없는가?

A 제출도서의 표현과 이를 위한 프로그램의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 공모전에서는 제출도서의 간소화, 온라인 응모신청, 작품접수 등을 통하여 참가자들의 참가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07. **Q** 서식7의 "참가작품 명칭"이란 "경기도 사격플라자"를 일컫는 것인지, 아니면 참가작품별 디자인 개념이 반영된 특정 명칭도 가능한 것인가?

A 설계설명서 표지의 "참가작품 명칭"에는 참가자작품별 디자인 개념이 반영된 특정 명칭을 사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08. **Q** 설계설명서 표지에 대한 서식은 있으나 설계설명서 속지에 대한 제공서식은 없는바, 양식 없이 순수하게 내용만 담아야 하는지 아니면 양식(테두리나 띠, PAGE 타이틀 및 숫자 표기 등등)은 임의표현하여도 무방한가?

A 설계설명서의 표지는 제공한 [서식 7]의 폰트, 글자크기, 여백 등의 서식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해야 합니다. 표지를 제외한 설계설명서의 표현은 참가자가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계설명서 작성요령은 설계지침서 1.12(익명성), 3장(제출도서 및 작성기준)을 참고 바랍니다.

09. **Q** 제출물 중 「'대표자 선임계」 및 「공동응모협정서」는 공동응모 시만 제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

A 「대표자 선임계」는 공동응모가 아닌 경우라도 하나의 설계사무소에 대표가 2인 이상일 경우에도 모두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응모협정서」는 공동응모 시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D. 설계지침 2.0 버전 수정 사항

설계지침	내용
1.11, 3.3. (2)	작품제출 일정 오기 수정
2.2. (4)	기존 경기도사격테마파크 건축개요
2.4. (2)	최대 층수 6층(지상)